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 서울고법 2013.7.19. 선고 2012나59871 판결을 중심으로 -

강 호 경*

-
- I. 서 언
 - II. CISG상 계약의 성립
 - III. 사안의 개요
 - IV. 사안의 검토
 - V. 결 언
-

주제어 : CISG,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 대응청약

I. 서 언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3월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이 발효되어,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였다.

*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그간 CISG를 직접 적용한 우리법원의 판결도 여럿 선고되었으며,¹⁾ 지난해에는 대법원에서 CISG를 적용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들 판결 중 지난해 대법원에서 내려진 리베리나 사건(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 103977 판결)²⁾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이머징 사건(서울고법 2013.7.19. 선고 2012나59871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들은 이미 국내에 소개된 바가 있다.³⁾ 다만, 리베리나 사건은 기 소개된 하급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1.10.27. 선고 2011나8463의 판결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소개된 바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에 소개된바 없는 이머징 사건을 연구·분석하여 CISG를 적용하는 우리법원의 태도를 확인한다. 특히, 이머징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려는 당사자로서는 계약의 성립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근본적 방어수단이 될 것이므로,⁴⁾ 계약의 성립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CISG가 적용된 사례를 발굴하여 연구·분석하는 것은, 국제거래상 분쟁예방과 분쟁발생시 기업들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제2장에서는 CISG상 청약과 승낙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전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대상판결과 함께 유사판결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CISG상 청약과 승낙에 대한 우리법원의 태도를 확인하여 제5장에서 우리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 서울고법 2013.7.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2.12. 선고 2008나20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7.23. 선고 2008나1485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12.21. 선고 2010가합793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4.13. 선고 2008가합147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19. 선고 2007가합978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5. 선고 2007가합196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7가합11525 판결.

2) 이하에서 편의상 사건명은 원고의 이름을 따른다.

3)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소개와 검토”,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학회, 제20권 제1호, 2011.

4) 지원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한국의 매매법 -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권 제1호, 2011, p. 170.

II. CISG상 계약의 성립

CISG는 제2편 계약의 성립에서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고 규정하면서, 청약과 승낙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분설하면 아래와 같다.

1. 청약의 요건

CISG는 제14조 제1항에서 청약은 계약체결에 대한 제안으로서, 첫째, 특정인에 대한 것이어야 하나 이때 특정인이 반드시 1인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한다.

둘째,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청약이 (1)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묵시적으로 (2) 수량과 (3) 대금을 지정할 것을 규정한다. CISG가 이 세가지 요건만으로 확정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 외 조건은 거래관습이나 CISG 제3편의 조항들로 보충되기 때문이다.⁵⁾ 그 결과 제품의 품질·명세 등의 기재여부는 청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승낙시 청약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실무적으로는 청약상 별도로 구속의 의사(intend to bind)를 기재하기 보다는 승낙을 위한 시간제한, 즉, 유효기간(validity)으로써 구속의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청약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동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준거법의 유관 조문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CISG는 유효성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대리인에 의하여 청약이 작성된 경우에 있어 권한 있는 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된다.⁶⁾ 따라서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거법상의 강행규정이나 관련규정을 받

5) 오원석, UN 통일매매법하에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차이,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8권 제1호, 2003.4, p. 8.

6) 또한, 영미법은 가격을 특정하지 않는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반면에 프랑스와 스페인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김재성, “유럽 법제에서 오픈 프라이스 청약의 유효성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8권, 2008, p. 48).

시 충족하여야 한다.⁷⁾

동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약은 CISG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2. 승낙의 요건

CISG는 제18조 제1항에서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반드시 “승낙”(accep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승낙은 그 형식과 내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서면방식 이외에도 동의를 진술이나 행위로도 가능하며, 명시적인 방법이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승낙은 계약체결을 상정한 청약에 대한 동의를 의사가 표현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단순히 청약을 수령하였다는 의사표시나 청약에 대한 감사의 인사 등은 승낙이 될 수 없다.⁸⁾ 이와는 달리 청약이라고 기재된 매도인의 “주문확인서”(confirmation form)에 매수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승낙이 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주문확정에 대한 매도인의 감사의 이메일⁹⁾이나 매도인이 발행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또한 승낙이 될 수 있다.¹⁰⁾

나아가 동조 제1항은 행위로서도 승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예컨대, 물품을 발송하거나, 발송을 위하여 포장을 하거나, 물품을 인도하거나, 물품을 수령하거나, 매도인이 서류를 교부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생산을 개시하거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적일자를 통지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승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낙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¹¹⁾

7) Schroeter, Commentary on Art.14, IN : Ingeborg Schwenzer(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258.

8) 동지, 이기수 · 신창섭, 국제거래법(제5판), 세창출판사, 2013, p. 44.

9) District Court (Landesgericht) of Hamburg, 26 November 2003 [411 O 199/02] at <http://cisgw3.law.pace.edu/cases/031126g1.html>.

10) District Court in Nitra 27 February 2006 [23 Cb/211/2005], at <http://cisgw3.law.pace.edu/cases/060227k1.html>.

이때 청약과 마찬가지로 승낙은 동조 제1항의 요건 이외에도 준거법상의 강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예컨대, 행위능력이나 의사표현의 부족 또는 권한 없는 대리인인지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낙은 CISG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행위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된다.

3.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승낙

피청약자가 청약의 조건에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한 경우에, 승낙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CISG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되는데, 변경이 가해진 응답은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으므로 청약에 대한 거절이지만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청약자의 의도를 탐색하기 위한 독립된 통신으로 간주하여 대응청약이 가해진 것으로 본다.¹²⁾ 이때 대응청약에 청약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CISG 제19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인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승낙이 된다고 규정하여,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한다. 다만, 피청약자의 침묵 또는 부작위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승낙에 포함된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이 실질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CISG 제19조 제3항은 실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질적 변경의 해석기준을 제시한다. 예컨대,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 등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즉, 대금 또는 대금지급방식의 변경, 예컨대, 송금방식에서 신용장방식에서의 변경, 또는 인도조건이나 인도시기의 변경, 예컨대,

11) Schroeter, *op. cit.*, p. 320.

12) 오원석,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acceptance with modifications)의 효과와 문제점 - CISG 제19조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3권, 2004.8, p. 77.

EXW 규칙에서 FOB 규칙으로의 변경, 또는 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수량을 증가하거나 감축하는 것, 또는 중재합의나 관할합의 등의 변경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¹³⁾ 그러나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변경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승낙상의 변경은 비실질적인 것이 된다.¹⁴⁾

다만, 동조 제3항에서 열거된 조건들의 변경‘만’이 ‘항상’ ‘반드시’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송부한 승낙이 동조 제3항상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나, 피청약자의 의도가 실질적인 변경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다수설은 평가여지를 인정한다.¹⁵⁾ 즉, 동조 제3항은 실무적으로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변경으로 의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나열한 것일 뿐, 동조 제3항으로 당사자자치를 제한하거나 청약자나 피청약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동항에 열거된 사안들이 항상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밖의 사안이라고 하여 항상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지의 여부는 개별 상황하에서 청약의 변경된 내용을 수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통상 주문의 크기나 당사자간의 관계 또는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선적항이나 선박 또는 선적일자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계약상 당사자 일방이 결정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한바, 이 경우에 청약과 승낙간 내용상의 차이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의 변경이나 상이한 준거법의 선택 등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¹⁶⁾

13) Schroeter, *op. cit.*, 339.

14) Peter Winship, *Formation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under the 1980 Vienna Convention*, 17 *International Lawyer* (1983), p. 12.

15)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 92 ; 최홍섭, 유엔국제매매법, 인하대학교출판부, 1997, p. 55 ; Schroeter, *op. cit.*, p. 340.

16) 석광현, 전게서, p. 81 ; 지원림, 전계 논문, p. 177 ; 최홍섭, 전게서, 37 ; Schroeter, *op. cit.*, p. 342.

4. 계약의 성립

CISG 제23조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는 때 성립함을 규정한다. 승낙의 효력은 CISG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바, 동의를 의사표시인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장기거래를 상정하고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당사자들간에 확립된 특정행위로써 승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청약자가 명시적인 승낙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CISG는 제18조 제3항에서 청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 또는 대금지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그 결과 동조 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청약, 관행 또는 당사자간 확립된 관례에 따라 청약자에게 통지 없이 동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물품을 포장·발송하거나, 매수인에 의하여 준비된 물품을 수거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수령하거나 매도인이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또는 물품을 표시하는 그 밖의 서류를 발송하거나 또는 대금지급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의 통지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나,¹⁷⁾ 행위로서 승낙을 의도하는 경우에는 승낙의 철회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Ⅲ.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 회사인 피고 매수인 주식회사 파인디지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17) 최홍섭, 전게서, p. 52.

은 매수인이 제조하는 내비게이션에 사용될 터치 윈도우 패널(이하 ‘패널’이라 한다)의 제작·주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0년 4월경 타이완 회사인 윈고 매도인 이머징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영한 제작도면을 교부받아 검토하였다.

2) 매수인은 2010년 8월 13일에 패널 5,000개를 미화 124,000달러에 매도인의 타이완 공장에서 인도받는 조건(Ex Works)으로 2010년 8월 30일까지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동 발주서에는 대금의 지급은 신용장에 의하고 이행기는 2010년 8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3) 매도인은 동년 8월 20일에 샘플을 제작하여 매수인의 승인을 요구하였는데, 매수인은 승인 없이 동년 10월 8일에 소프트웨어의 사양변경을 요구하였고, 10월 15일에 전면 윈도우 디자인에 대한 시방서를 제시하였으며, 10월 25일에 전면 윈도우의 강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패널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후 매수인은 10월 26일에 패널의 소프트웨어를, 11월 4일에 패널의 커버렌스를 승인함으로써, 매도인의 샘플을 최종 승인하였다.

4) 한편, 매도인은 2010년 9월 13일에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송부하였다. 견적송장상 대금은 타이완에서의 본선인도조건(FOB Taiwan)에 따른 전신환 사전송금(T/T in advance) 또는 일람불 신용장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행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은 발주서의 기재와 다르다.

5) 매수인은 2010년 10월 21일에 패널의 최종 선적기일을 2010년 11월 20일, 수익자를 매도인으로 한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동 신용장의 인도 조건은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FOB Taiwan Airport)이었다.

6) 매도인은 2010년 11월 3일경 매수인에게 부품의 납기문제로 신용장의 선적기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2010년 11월 18일에 매수인에게 ‘신용장의 선적기일 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셔야 ..., 만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7) 매도인은 2011년 5월 12일에 매수인에게 패널의 수령을 최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동년 5월 23일에 ‘본 계약의 이행기는 2010년 11월 20일 인데 매도인이 이행기내에 패널을 제작·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송부하였다.

8) 매도인은 패널 완제품 및 반제품 6천여 개를 제작·보관 중에 있다.

2. 사안의 쟁점

1) 매도인(이머징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의 주장

매도인은 2010년 8월 13일에 매수인과 패널의 제작·공급계약(이하 ‘패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신용장상 최종선적일인 2010년 11월 20일까지 패널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널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매수인은 패널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124,000달러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매수인(주식회사 파인디지털)의 주장

패널공급계약에서 이행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패널의 제작을 의뢰하게 된 것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패널을 장착한 내비게이션을 출시하기 위한 것이고, 내비게이션은 그 특성상 출시시기에 따라 상업적 성공여부가 좌우되며, 매도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가사, 매도인의 주장과 같이 패널공급계약상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또는 늦어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인 2010년 12월 이내에 이행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패널공급계약은 중요한 부분에 관한 합의가 없어서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판결요지

매수인은 타이완에 본사를 둔 매도인에게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송부한 이후에, 매도인이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을 가한 대로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매수인이 계속하여 제품 수정을 요구하다가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야 제품사양에 관한 최종승인을 한 사안에서,

1) 매수인은 수차례에 걸쳐 매도인에게 제작도면 및 샘플제작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매도인도 이에 따라 패넬의 샘플 등을 제작하여 매수인에게 송부해 승인을 받았으며, 그 결과 매수인은 2010년 8월 13일에 매도인에게 패넬의 수량과 대금, 이행기가 기재된 발주서를 보낸 점,

2) 발주서상 이행기가 ‘2010년 8월 30일’임에도 그 이후까지 패넬에 대한 지속적인 사양 변경이 있다가 동년 11월 4일에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패넬은 매수인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제작이 가능한 점,

3)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시 이행기를 ‘2010년 11월 20일’로 기재한 점,

4) 비록 매도인이 2010년 9월 13일에 견적송장을 송부하면서 대금은 타이완에서의 본선인도조건에 따른 전신환 사전송금 또는 일람불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기재하여 발주서의 인도조건인 공장인도조건과 상이하게 기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그리 큰 차이가 아니고, 대금지급방식도 발주서와 일부 상이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방법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매수인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취지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당초와 같이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조건이 확정된바, 매도인이 견적송장에서 변경한 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매수인이 즉시 이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따라,

5) 매수인의 발주서 송부 이후에, 매도인은 매수인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제작도면 및 샘플을 제작하는 등으로 매수인의 청약을 승낙하면서 일부 부수적인 조건을 변경한 견적송장을 송부하였다. 따라서 패넬공급계약은 발주서의 청약조건에 견적송장에서 변경을 가한 대로 계약조건이 정해져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패넬은 매수인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행기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묵시적으로라도 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다.

6) 그 결과 재판부는 패널공급계약은 견적송장이 송부된 날인 2010년 9월 13일경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패널공급계약이 당초부터 이행기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2010년 12월 말경까지 이행기의 합의가 없어 불성립하였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IV. 사안의 검토

1. 사안의 검토

1) 매수인의 발주서(purchase order)

CISG는 제14조 제1항에서 청약의 요건으로써 특정성과 확정성 그리고 구속 의사를 규정한다. 이때 청약이 확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의 결과, 2010년 8월 13일에 매도인에게 패널구매를 위한 발주서(판결문에는 발주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purchase order'로 보인다)를 송부하였다. 동 발주서는 ① 특정인으로써 매도인에게 구매를 제안하고 있고 ② 물품인 패널과 그 수량과 대금 또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행기가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매수인은 청약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일견 매수인의 발주서를 CISG상의 청약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도인이 청약을 수령한 이후에 매수인의 패널승인이 지연되자, 매도인은 청약에서 제시하는 이행기내에 패널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매수인의 발주서는 매도인의 의무이행 없이 이행기를 도과하게 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청약은 실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가사,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부에서 “매수인이 발주서를 발행한 이후에 ...

매도인이 제작도면 및 샘플을 제작하는 등으로 매수인의 청약을 승낙하면서… (밑줄은 논자가 추가)”라고 판시하여 매수인의 발주서에 기한 매도인의 제작도면 및 샘플제작을 승낙으로 보고 있으나, 제작도면 및 샘플의 제작이 매도인이 의도한 승낙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후술할 계약의 성립일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과 상충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매도인의 제작도면 및 샘플제작은 단지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인의 발주서는 청약으로써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매도인의 제작도면 및 샘플제작(specification & sample)

CISG는 제18조 제1항에서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청약자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¹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이 발주서를 발행한 이후에 … 매도인이 제작도면 및 샘플을 제작하는 등으로 매수인의 청약을 승낙하면서…(밑줄은 논자가 추가)”라고 판시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제작도면과 샘플을 제작한 사실을 CISG 제18조 제3항상의 의사실현에 의한 동의를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의문이다.

첫째, 매도인이 제작도면과 샘플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협의의 과정일 뿐이지 승낙을 의도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둘째,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약이나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이 선행되어야 하나,¹⁹⁾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그러

18) 동지,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p. 52; 석광현, 전계서, 박영사, 2010, p. 88 ; 이기수·신창섭, 전계서, p. 46.

19) France: Court of Appeal of Grenoble, 21 October 1999, Soci t e Calzados Magnanni v. SARL Shoes General International (SGI); A/CN.9/SERC/ABSTRACTS/28, 3 March 2000, Case 313에서 프랑스 항소법원은 수년간 매도인은 매수인의 구매 주문서에 대하여 승낙없이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므로, 승낙없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 관례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셋째, 재판부는 계약의 성립시점에 관하여 이하에서 상술할 매도인의 견적송장 발송일로 판단함으로써, 매도인의 제작도면과 샘플제작이 승낙이라고 판단한 스스로의 판결을 부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매도인의 제작도면 및 샘플제작은 단지 계약체결을 위한 매수인과의 협의과정 중 일련의 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매도인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매도인은 매수인이 발주서를 송부한 이후에 제작도면 및 샘플을 제작하여 송부한 한편 대금지급방법과 인코텀즈 규칙 그리고 이행기가 변경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²⁰⁾을 송부하였는바, 재판부는 “매수인 발주서의 청약조건에 견적송장에서 변경을 가한 대로 계약조건이 체결되었다”고 판시하여, 매수인이 변경한 청약의 조건들을 실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인의 견적송장을 CISG는 제18조 제1항상의 승낙으로 인정하였다.

재판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CISG 제18조 제1항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동의는 대응청약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대금지급 및 인도장소의 변경 등을 실질적 변경의 예로 나열한다. 그 결과 매도인이 변경한 조건인 대금지급방법과 인코텀즈 규칙 그리고 이행기의 변경 등은 일견 동조 제3항상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조 제3항상의 나열은 실무적으로 당사자들이 실질적 변경을 의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일 뿐 반드시 실질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본 사건에서 매도인은 첫째, 대금지급방법으로서 매수인의 발주서상 기재된 ‘일람불 신용장’을 견적송장상 ‘전신환 사전송금’ 또는 ‘일람불 신용장’으로 변경하였다.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매도인의 변경이 대금지급방식을 실질적으로

보았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히는 하강헌, “국제물품매매에서 승낙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3권, 2009, p. 31 참조).

20)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이 반드시 “청약(offer)”이라는 표제를 가질 필요는 없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이나 확약서(letter of confirmation) 등의 제하에서도 CISG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될 수 있다(Schroeter, *op. cit.*, p. 258).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지급방식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여전히 매수인에게
는 일람불 신용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므로, 재판부가 청약의 실
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긍정된다.

둘째, 인코텀즈 규칙의 변경으로서 매도인은 청약상의 EWX규칙을 견적송
장상 FOB규칙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FOB규칙으로의 변경
은 실질적으로 그리 큰 차이가 아니므로 청약의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판
시하였으나, 이는 의문이다. 실무적으로 교섭단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대
금과 관련된 문제로, 단 1달러의 조정을 위해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수일에
걸쳐 협의한다. 특히, 본 사건에서처럼 대금이 큰 경우에는 FOB규칙상의 인도
장소까지 내륙운송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추가
적인 비용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와는
달리 그러한 비용을 매도인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변경의 경우에는 실질적이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²¹⁾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건변경에 대하여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셋째, 매도인은 견적송장에서 매수인이 제시한 이행기를 기재하는 대신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패널의 특성상 매수인의 승인 이
후에 제작이 가능하므로 … 이행기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묵시적으
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긍정된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견적송장
을 매수인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견적송장이 송부된 일자를 계약의 성
립일로 보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의문이 없지 않다.

4) 본 사건의 청약

통상의 실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유선이나 이메일 또는 면담 등의 방식
으로 수차례의 교섭단계를 통하여 거래조건에 합의하게 되고, 그 최종적인 거

21) 보다 큰 폭의 할인, 무료 운송, 담보기간의 확장 등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으로 청약의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한 변경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계약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승낙 없이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다(이기수·신창섭, 전제서, pp. 45~46; Schroeter, *op. cit.*, p. 341).

래조건을 매수인이 발주서(purchase order)에 또는 매도인이 견적서(offer sheet)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에 담게 된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계약이 성립된바, 이 경우에 어떠한 의사표현이 청약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CISG는 제11조에서 형식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형식의 청약과 승낙은 물론 구두형식이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청약과 승낙도 가능하다. 즉, 청약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선이나 이메일 또는 면담 등의 방식에 의한 청약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그 방식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적인 거래제안이 청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²²⁾

즉, 매수인의 발주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패널의 승인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패널의 승인 이전에 발주서의 이행기가 도과되었으므로 매수인의 발주서는 실효되어 청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는 발주서상 이행기의 도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섭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매도인이 견적송장을 송부한바, 매도인이 견적송장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최후의 거래제안, 즉, 실무적으로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제시된 최후의 거래제안이 청약이 되어야 한다.

5) 본 사건의 승낙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당사자간 거래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매수인의 발주서나 매도인의 견적송장 작성 이전에 유선이나 이메일 또는 면담 등의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상대방의 최종적인 거래제안에 대하여 진술 그 밖의 행위로 동의를 표시하는 의사가 곧 승낙이 되므로, 예컨대, 가격이 중요한 쟁점인 면담에서 상대방의 수정된 가격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였다면 그러한 구두의 동의로써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조건 확인이나 주문확정에 대한 증빙으로 또는

22) 다만, 분쟁발생시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서면 이외 방식의 청약은 증거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France : Court of Appeal of Paris, 2002/02304, 10 September 2003, SociétéHGmbH & Co. v. SARL M : A/CN.9/SER.C/ABSTRACTS/43, 20 December 2004, Case 490에서 구두에 의한 청약을 입증하지 못한 매도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자세히는 하강현, 전제 논문, p. 32 참조).

대금지급이나 통관 등을 위한 증빙으로서 제3자의 요구에 따라 피청약자의 승낙과는 별개로 서면상의 기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서면상의 기재를 매수인이 발행하면 발주서 또는 매도인이 발행하면 견적서나 견적송장이 된다. 그 결과, 구두나 이메일 또는 면담 등의 방식을 통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더라도 통상적인 상관행은 이를 수령하는 것으로서 주문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바, 우리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승낙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낙의 인정여부는 CISG상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섭과정에서 그 형식과 관계없이 최종적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낸 동의의 의사표시가 승낙이 되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의 발주서나 매도인의 견적서 또는 견적송장이 문제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의 발행을 조건으로 의사의 합치에 이르는 것이 상관행이므로, 이는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으로 이해되어 매수인의 발주서나 매도인의 견적서 또는 견적송장이 송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실무적 관점에 있어, 매수인의 견적서가 실효된 이후에 당사자간에는 변경된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로서 매도인이 새로이 합의된 조건으로 견적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의 견적송장이 송부된 날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견적송장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서 승낙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본 사건 계약의 성립시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때, 즉, 승낙이 도달한 때가 된다.

실무적 관점에서 매수인의 견적서가 실효된 이후에 당사자간에는 변경된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양당사자는 새로운 조건에 합의하기에 이르러 그 결과로써 견적송장이 작성·송부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계약의 성립은 매도인이 견적송장을 작성·송부할 수 있도록 이메일 또는 면담 등의 방식을 통하여 청약자의 최종적인 거래제안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의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우리법원은 당사자간에 의사합치의 결과물인 매수인의 발주서나 매도인의 견적서 또는 견적송장의 이메일을 통한 발송일을 일관되게 승낙이 효력

을 갖는 날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우리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2. 관련 사례

1) 부성스포츠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9698)

한국 매수인(원고) 부성스포츠(이하 ‘부성스포츠’라 한다)는 스페인 매도인(피고) 조마스포츠(이하 ‘조마스포츠’라 한다)와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최소구매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마스포츠로부터 의류, 신발 등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6년 8월 28일에 부성스포츠는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명대신 ‘Track Suit, Winter Vest, Upper of Track Suit’ 등과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제품을 기재하였고, 이에 더하여 가격의 표시 없이 색상과 사이즈만을 기재하여 구매를 주문하였다. 이에 응하여 조마스포츠는 2006년 9월 6일에 부성스포츠에게 견적송장을 발송함으로써, 우리법원은 부성스포츠와 조마스포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성스포츠의 구매주문서에 기하여 조마스포츠가 일방적으로 모델과 가격을 결정하여 견적송장을 발송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실무적으로는 구매주문서를 수령한 조마스포츠가 생산가능한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고 선정된 모델별 대금을 부성스포츠와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단순한 구매의사를 표한 부성스포츠의 구매주문서는 청약의 유인이 되고, 이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제시된 최종적인 거래제안이 청약이 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진술 그 밖의 행위로 이루어진 동의를 의사표시가 승낙으로 인정되어 그러한 승낙이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계약성립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오토엠 코리아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4769)

한국 매수인(원고) 오토엠 코리아(이하 ‘오토엠’라고 한다)는 미국 매수인(피고) 마제스틱 컨버전(이하 ‘마제스틱’이라 한다)으로부터 벤츠승용차 13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마제스틱에게 계약서와 송장을 2008년 9월 17일자 이메일로 요청하였다. 이에 마제스틱은 벤츠승용차 13대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과

가격이 기재된 견적서(offer sheet)를 첨부하여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2008년 9월 18일자 이메일과 함께 회신하였다.

오토엠의 9월 17일자 이메일과 마제스틱의 9월 18일자 이메일 중 승용차 일부의 차량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나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마제스틱이 9월 18일자 이메일에서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오토엠이 이에 대하여 즉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법원은 9월 18일자 마제스틱의 회신 이메일을 오토엠이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법원은 당사자간의 협상과정에서 최종적인 의사의 합치를 청약으로 보고, 그 내용이 기재된 마제스틱의 견적서를 승낙으로 보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오토엠이 마제스틱에게 견적서의 발송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당사자간에 거래조건에 관한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오토엠이 마제스틱에게 견적서를 요구하기 이전의 교섭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토엠이 견적서를 요구한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 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승낙은 견적서의 발송이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최후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

대상판결에서 우리법원은 매수인의 발주서를 청약으로, 이후 발송된 매도인의 견적서를 승낙으로 인정하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리법원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매수인의 발주서는 매수인의 패널승인 지연으로 그 이행기가 도과되었고 이행기가 도과된 발주서는 유효기간의 경과와 동일하게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우리법원은 이를 유효한 청약으로 보았다.

둘째, 매도인이 제작도면 및 샘플을 제작한 행위가 승낙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우리법원이 매도인의 이러한 행위를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의사실현으로 승낙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그러한 관례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교섭과정 중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실무적으로 양당사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장기간의 교섭과정을 거치

는데, 이때 거래조건에 관하여 그 형식과 관계없이 제안된 최종적인 거래조건이 청약이 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승낙이 된다. 즉, 매수인의 발주서나 매도인의 견적서가 작성되기 이전의 최종적 동의가 승낙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승낙의 의사가 기재된 발주서나 견적서의 발송은 단순한 요식행위 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법원은 일관되게 당사자의 의사가 기재된 매수인의 견적서 또는 매도인의 발주서를 승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대상판결에서 계약의 성립시점이 아닌 성립여부가 다투어져서 성립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CISG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CISG상의 규정에 따라야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려는 당사자로서는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방어수단이 될 것인바, 이에 관한 우리법원의 면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V. 결 론

당사자간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유효성이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당사자 일방의 불이행 원인이 청약 또는 승낙이 CISG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계약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므로, CISG상 청약과 승낙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CISG는 제14조 제1항에서 청약은 특정인에 대한 거래제안으로서 그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하고 구속의 의사가 표시될 것을 규정한다. 또한 CISG 제18조 제1항은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CISG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의 조건에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이 가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이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승낙으로 인정됨을 규정한다. 특히, CISG 제11조에 따라 청약과 승낙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없으므로, 청약 또는 승낙의 판단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수많은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섭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발주서 또는 견적서

등의 형태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서 송부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돌입한다. 즉, 실무적 입장에서의 발주서 또는 견적서의 기재는 최종적 합의에 관한 불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적 측면과 함께 대금결제나 세금신고 또는 수출입통관 등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당사자 일방이 관행적으로 작성한다.

그러나 우리법원은 CISG가 적용된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의 발주서 또는 견적서를 일관되게 승낙으로 인정하여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발주서 또는 견적서가 승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승낙을 위한 청약의 유효성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논의 없이 승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법원의 입장은 청약에 대한 유효성의 판단없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발주서 또는 견적서를 승낙으로 인정하고, 특히, 이메일 등의 동시도달수단을 통한 송부의 경우에 그 일자를 계약의 성립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도 상대방과의 통신상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표시하여, 계약의 성립여부 또는 그 시기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재성, “유럽 법제에서 오픈 프라이스 청약의 유효성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8권, 2008.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소개와 검토”,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학회, 제20권 제1호, 2011.
- _____,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오원석,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acceptance with modifications)의 효과와 문제점 - CISG 제19조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3권, 2004.
- _____, “UN 통일매매법하에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차이”,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8권 제1호, 2003.4.
- 이기수·신창섭, 국제거래법(제4판), 세창출판사, 2010.
- 지원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한국의 매매법 -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권 제1호, 2011.
-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 _____, 유엔국제매매법, 인하대학교출판부, 1997.
-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승낙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3권, 2009.
- <http://glaw.scourt.go.kr>(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cisgw3.law.pace.edu>(Pace Law School).
- Schwenzer, Ingeborg(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Winship, Peter, *Formation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under the 1980 Vienna Convention*, 17 International Lawyer(1983).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CISG - Focus on Emerging Display Technologies v. Fine Digital Inc.-

Kang, Ho Kyung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CISG through the case by the Korean court.

Under the CISG, an offer means that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constitutes the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n acceptance is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and this statement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In practice, parties negotiate for lots of contract terms to conclude the contract, and the last reply indicating of assent which is made by statement or other conduct to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would be an acceptance. At this ti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intention of parties whether they intend the offer or the acceptance, Purchase order by buyer or Offer Sheet by seller would be understand as condition precedent for the formation of contract.

Nevertheless, keep in mind that the Korean court is consistent in the way Purchase order by buyer or Offer Sheet by seller is an acceptance to conclude contract.

Key Word : CISG, Formation of Contract, Offer, Acceptance, Counter Offer